



2020. 11. 1. SUN



법원행정처

## 목 차

### contents

내규	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	1833
	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	1834
예규	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	1842
신법령목록		1844

## 내규

---

### ●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

(법원행정처 내규 제102호 2020. 10. 23. 결재)

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◎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(대법원내규 제522호 2020. 10. 26. 결재)

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”를 “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, 연임법관연수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2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⑤ 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제4항 중 “제15조제1항”을 “제15조”로 한다.

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7장 연임법관연수

제40조(연임법관연수)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(이하 ‘연임법관연수’라 한다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,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(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)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(보수는 제외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2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⑥ 제5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별표 2 “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**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제3항제1·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제3항제3호 해당자	$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월수} - \text{복무월수} \dots}{\text{의무복무월수} \dots}$
3. 제15조제4항제1호 해당자	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
4. 제15조제4항제2호 해당자	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 환수

\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
- \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\*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(제40조 관련)**

결과보고서 제출시기	기준	반 납 액
1. 제40조제5항제1호 해당자		소요경비 × 20%
2. 제40조제5항제2호 해당자		소요경비 × 40%

비고

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소요경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임법관연수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국비 해외연수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8호]

사 유 서

성 명	한글(한자)	( )
	영 문	
소 속		
직 위		
연수학교(연수국가)		
연 수 과 정		
연수종료일		
결과보고서 제출 기한		
사 유		
비 고		

위와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(인) 또는 서명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적용범위)</p> <p>① 이 내규는 재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<u>해외 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 대법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 (연수종료보고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적용범위)</p> <p>① -----<u>해외 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, 연임법관연수</u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 (연수종료보고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</p> <p>2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5조의2(연구법관의 해외연구)</p>	<p>제15조의2(연구법관의 해외연구)</p>



현행

- ① ~ ③ (생략)
  - ④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연구법관에 대하여는 제11조, 14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⑤ (생략)
- <신설>

개정안
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  
-----제15조의 -----.
-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장 연임법관연수

제40조(연임법관연수)

-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(이하 '연임법관연수'라 한다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,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(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)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(보수는 제외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 2]

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 제3항 제1·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 제3항 제3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$\frac{\text{의무복무월수} - \text{복무월수}}{\text{의무복무월수}}$

- \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- \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<신 설>

[별표 2]

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제3항 제1·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제3항 제3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$\frac{\text{의무복무월수} - \text{복무월수}}{\text{의무복무월수}}$
3. 제15조제4항 제1호 해당자	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
4. 제15조제4항 제2호 해당자	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 환수

- \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- \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\*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[별표 3]

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(제40조 관련)

결과보고서 제출시기	기준	반납액
1. 제40조제5항제1호 해당자		소요경비 × 20%
2. 제40조제5항제2호 해당자		소요경비 × 40%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비고  
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소요경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[별지 제8호]

사유서

성 명	한글(한자)	( )
	영 문	
소 속		
직 위		
연수학교(연수국가)		
연 수 과 정		
연수종료일		
결과보고서 제출 기한		
사 유		
비 고		

위와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 
신청합니다.

20 . . .  
신청인 (인) 또는 서명

## 예규

---

### ●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232호 2020. 10. 14. 결재)

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V. 3. 가. 중 “7인”을 “12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IV. 성과급심사위원회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위원회의 구성</p> <p>가. 위원회는 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규칙」 제12조제5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IV. 성과급심사위원회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위원회의 구성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2인</u>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신법령 목록

(2020. 10. 1. ~ 10. 15.)

### 조약

조약제2460호	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	19848	2020. 10. 5.	5
----------	--	-------	--------------	---

### 대통령령

대통령령제31082호	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48	2020. 10. 5.	8
대통령령제31083호	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50	2020. 10. 7.	7
대통령령제31084호	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2
대통령령제31085호	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4
대통령령제31086호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7
대통령령제31087호	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9
대통령령제31088호	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20
대통령령제31089호	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	"	"	25
대통령령제31090호	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	"	"	46
대통령령제31091호	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	"	"	51
대통령령제31092호	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1
대통령령제31093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52
대통령령제31094호	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53
대통령령제31095호	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54

대통령령제31096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50	2020. 10. 7.	55
대통령령제31097호	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6
대통령령제31111호	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53	2020. 10. 13.	4
대통령령제31112호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22
대통령령제31113호	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30

총리령

총리령제1649호	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1	2020. 10. 8.	4
총리령제1650호	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19854	2020. 10. 14.	4

부령

기획재정부령제806호	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48	2020. 10. 5.	9
기획재정부령제808호	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	"	"	16
행정안전부령제204호	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38
기획재정부령제809호	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0	2020. 10. 7.	57
법무부령제985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6
행정안전부령제205호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8
농림축산식품부령제449호	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75
농림축산식품부령제450호	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79
보건복지부령제754호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83
보건복지부령제756호	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84
국토교통부령제765호	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91
국토교통부령제767호	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05

법무부령제981호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	19850	2020. 10. 7.	118
보건복지부령제753호	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1	2020. 10. 8.	8
보건복지부령제755호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"	"	9
보건복지부령제757호	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2
국토교통부령제762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9
국토교통부령제763호	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20
국토교통부령제764호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22
국토교통부령제766호	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23
해양수산부령제440호	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23
중소벤처기업부령제38호	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27
행정안전부령제206호	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2	2020. 10. 12.	5
해양수산부령제441호	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"	"	14
환경부령제857호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	"	"	17
교육부령제220호	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3	2020. 10. 13.	31
법무부령제986호	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	"	"	32
산업통상자원부령제396호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4	2020. 10. 14.	7
국토교통부령제768호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5	2020. 10. 15.	4
대통령령제31086호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	"	"	8